

1. 개정이유

허가어선의 대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허가어선 대체시 저당권 설정 어선에 대한 허가관청 확인 의무 부여, 어업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어선의 대체 등(안 제18조)

- 허가어선을 대체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 허가어선 대체관련 행정사무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규칙 제도화를 위한 법령 위임근거 규정

나. 어업의 폐업신고(안 제28조)

-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0. 10. . ~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전단”을 “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같은 종류의 어업허가 어선을 상호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어선과 대체되는 어선의 허가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존 어선·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
3. 저당권자의 동의서(대상 어선·어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를 위한 어업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항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면 어업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 신청 어선·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어선의 대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 ③ (생략) ④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u>기존의 노후한 어선·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과</u> <u>저당권자의 동의서(조치계획의 대상 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u>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선·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u>제16조제2항에 따른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u>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어업허가증(같은 종류의 어업허가 어선을 상호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어선과 대체되는 어선의 허가증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u> 2. <u>기존 어선·어구의 폐기, 수출, 다른 어선에 대한 대체허가신청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비(非)어로선으로의 사용 등(이하 "어선·어구의 폐기등"이라 한다)의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u> 3. <u>저당권자의 동의서(대상 어선·어구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u>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를 위한 어업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항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신 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면 어업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체 신청 어선·어구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어선·어구의 폐기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는 새로운 어선·어구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어선·어구를 다시 다른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신청하려면 그 허가받은 어선·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서남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선 한 척을 추가하여 서남해구쌍끝이중형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 설>

제28조(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어선·어구의 폐기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는 새로운 어선·어구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어선·어구를 다시 다른 어선·어구로 대체하여 허가를 신청하려면 그 허가받은 어선·어구의 폐기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

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어선의 대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